

「유치원 규정집」 신구조문대비표

2010. 2. 28. 제정 판 (시행 2010. 3. 1.) → 2016. 2. 29. 개정 판 (시행 2016. 3. 1.)

바뀜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21/compare?from=553&to=555>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6:17:38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u>유치원 원장</u> , 유치원 원감, 교무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u>총무부장</u> , 유아교육과 학과장 <u>으로 한다.</u>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재무담당자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제54조(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유치원 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u>내부감사</u> , 유아교육과 학과장, <u>학부모대표(1)</u> 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재무담당자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제55조(위원회 역할)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교사 이상 교원인사, 학급편성 및 정원 책정, 예·결산 심의, <u>200만원 초과 재정관련 사항, 상벌에 관한 사항, 유치원 규정 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한</u>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② 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항, 200만 원 이하 재정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제55조(위원회 역할)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고 소위원회구성, <u>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에 관해</u>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16-02-29> ② 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항, 200만 원 이하 재정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유치원 규정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유치원 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유아교육과 학과장, 학부모대표(1)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고 소위원회구성,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에 관해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